



제 418회 국회 (정기회)
제7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3540호

2024. 11.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최선영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총괄 검토의견	2
IV . 주요 법안별 검토의견	4

I. 제안경위

2024년 9월 2일 이원택의원이 대표발의한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은 2024년 9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채무자 등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파산 등을 이유로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이 법의 취지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현행 법률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코로나 확산으로 파산 등의 신청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함께 고려할 때, 이러한 규정은 정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파산선고를 이유로 결격조항을 두고 있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11개 법률을 일괄하여 개정함으로써 파산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려는 것임.

Ⅲ. 총괄 검토의견

-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은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서, 차별적 취급을 금지하는 규정(제32조의2)¹⁾을 2006년에 신설하였음.
- 그런데, 코로나19를 거치며 파산신청 사례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다수 현행 법률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 등을 취업 등의 결격사유로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경제활동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등 해양수산부 소관 11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격사유 내용에서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경우’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파산자도 취업 등 자격을 취득하고 영업등록 및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파산자에 대한 불이익 문제를 해소할 뿐만 아니라 개인 파산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 파산제도는 변제능력이 없는 자에 대한 재건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채권에 대한 변제능력의 상실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직무 행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파산선고를 불성실의 징표 또는 사회적 신뢰의 상실로 보아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의2(차별적 취급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회생절차·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자격상실, 당연퇴직, 면허결격 등의 사유로 하고 있어 파산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측면이 있음.

- 다만, ①해당 업무의 수행과정에서 거래 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구하는 경우(「선주상호보험조합법」 상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 등), ②다른 업종과의 균형을 고려해야 하는 경우(「선박투자회사법」 상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 등), ③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경우(「수산업협동조합법」 상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임원 등)에는 파산등을 결격사유로 규정할 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가 적합한지에 대하여 보다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표] 파산선고 결격조항 정비 법안 목록

연번	법안명	정비 대상	개정 내용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해상특수경비원	파산선고 삭제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	파산선고 삭제
3	선박투자회사법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	파산선고 삭제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	파산선고 삭제
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산지중도매인 지정	파산선고 삭제
6	수산업협동조합법	지구별수협 조합원/지구별수협의 임원	파산선고 삭제
7	어선법	어선중개업 등록	파산선고 삭제
8	어장관리법	어장정화·정비업 등록	파산선고 삭제
9	염업조합법	염업조합의 임원	파산선고 삭제
10	해양환경관리법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	파산선고 삭제
11	해운법	해상여객운송사업	파산선고 삭제

IV. 주요 법안별 검토의견

1. 국제항해선박 등에 대한 해적행위 피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제1조)

- 개정안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과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사람(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5. (생략)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5. (현행과 같음)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 8. (생략) ② ~ ④ (생략)	제26조(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 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3.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19조에서는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에서는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해상특수경비업자인 법인의 임원, 해상특수경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이를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해상특수경비원’의 경우 선원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고려하면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과는 관련성이 낮아 보이므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사유에서 삭제하는 것은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원활하게 하는데 필요한 내용으로 판단됨.

다만, ‘해상특수경비업²⁾ 임원’의 경우 선박소유자등과의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과는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파산선고로 인해 채무자가 취업제한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해상특수경비원의 자격기준에 파산선고 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은 공감하지만, 임원의 경우에는 깊은 책임성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2) 해적으로부터 위협해역을 통항하는 국제항해선박 및 선원 보호를 위하여 무기를 휴대한 해상 특수경비원을 국제항해선박에 승선시켜 해적의 공격으로부터 선박 및 선원의 안전을 확보함

2.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안 제7조)

- 개정안은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수 없는 사람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에 임명될 수 없다. 1. (생 략)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생 략) ⑤ · ⑥ (생 략)	제60조(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1. (현행과 같음) <삭 제> 3. (현행과 같음) ⑤ · ⑥ (현행과 같음)

-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는 어선원 또는 어선보험 보험급여를 청구한 자가 수협중앙회 지역·지부의 결정에 불복하여 수협중앙회에 심사를 청구하고 수협중앙회의 심사 결정에도 불복하는 경우 이에 대한 재심사 청구를 검토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현행법 제60조에서는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에 임명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개정안은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어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보임.
- 동 위원회 위원의 업무는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라고 보기는 어렵고, 「채무자회생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적절한 입법조치로 보임.

3. 선박투자회사법(안 제2조)

-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 설립을 위한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 중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7조(발기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② (생략)	제7조(발기인) ① ----- ----- -----. 1. (현행과 같음) <u><삭 제></u> 3. ~ 7.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선박투자회사 발기인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결격사유는 자격취득 또는 영업허가 등을 받을 수 없는 소극적 요건으로서,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경제활동(영업)의 자유에 대한 본질적인 침해가 될 수 있으나,

종래에 유지하던 특정 신분 또는 자격 등을 가진 자들이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관련 분야에 종사

해서는 안 될 사람들을 원천적으로 배제하여 공공의 안전과 건전한 경제 질서 유지를 통해 일반 국민을 보호하는데 그 의의가 있음.

- 이를 고려할 때, 선박투자회사는 자산을 선박에 투자하여 그 수익을 주주에게 분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현행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로서, 선박투자회사의 발기인은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임.

또한, 자본시장에서의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과 비교할 때 현행법은 선박펀드에 관한 사항을 별도로 규정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지는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94조제1항에서는 투자회사 설립 시 발기인이 될 수 없는 자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의 경우 선박투자회사의 성격, 업무, 투자구조 및 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4. 선주상호보험조합법(안 제3조)

- 개정안은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합의 임원이 되지 못한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8. (생략) ②·③ (생략)	제4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8.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선주상호보험조합은 상호보험사업을 건전하게 경영함으로써 조합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와 조합 운영의 건전성·지속성 확보가 중요하고,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주요 사업이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등 금전적 배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³⁾을 감안해 볼 때, 선주상호보험조합의 임원은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과 같이 선주상호보험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 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것은 선주상호보험 조합에 대한 신뢰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3)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제3조(사업의 내용) 선주상호보험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은 조합원인 선주등이 부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책임 및 비용에 관한 손해보험사업을 한다.

1. 운송화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2. 선원, 여객 등의 사상(死傷)이나 질병에 대한 책임
3. 해양 등의 오염으로 인한 손해에 대한 책임 및 오염 제거비용
4. 선박충돌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한 책임
5. 부표(浮標), 잔교(棧橋), 해저전선(海底電線), 어구(漁具), 그 밖의 시설물의 손해에 대한 책임
6. 그 밖에 선박의 운항으로 인하여 선주등이 부담하여야 하는 책임과 비용

5.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4조)

- ☐ 개정안은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될 수 없는 사람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생략)	제14조(산지중도매인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위판장개설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 ----- ----- -----.
1.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이나 피성년후견인	1. <u>피성년후견인</u>

- ☐ 개정안은 산지중도매인 지정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산지중도매인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 다만, 산지중도매인은 수산물산지위판장에 상장된 수산물을 매수하여 도매하거나 매매를 중개하는 영업 등을 하면서 위판장에서 경락된 수산물에 대한 매매 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개정안과 같이 산지중도매인

으로 지정되어서는 안되는 사람으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6. 수산업협동조합법(안 제5조)

- 개정안은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원의 당연탈퇴 사유 중 ‘파산한 경우’와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탈퇴) ① (생략) ② 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당연히 탈퇴한다. 1. 2. (생략) 3. 파산한 경우 4. 5. (생략) ③ ④ (생략)	제31조(탈퇴)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5.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구별수협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1호와 제13호는 조합원인 임원에게만 적용한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 13. (생략) ② ③ (생략)	제5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 -----. 1. 2. (현행과 같음) <삭제> 4. ~ 13. (현행과 같음) ② 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당연탈퇴 및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①파산하더라도 조합원 당연탈퇴가 되지 않도록 하고,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아도 지구별수협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①조합원의 조합 당연탈퇴 사유 중 파산한 경우를 삭제하는 사항을 보면,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구성된 조합은 조합원이 가입신청을 하고, 출자금을 납입함으로써 조합원이 되는데 조합원이 파산선고를 받고 해당 조합원의 출자금이 압류 또는 추심되게 되면, 그 조합원은 납입된 출자금 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기존 조합원과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고, 조합의 자본 건전성을 악화시킬 수 있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다음으로, ②지구별수협 임원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삭제하는 사항을 보면,

지구별 수협은 조합원과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합원의 예금·적금의 수납업무 및 자금 대출 등 다양한 신용사업 등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구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지구별 수협 운영의 건전성 및 지속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의 입장을 보면, 해양수산부는 조합의 건전성 유지 측면에서 개정안을 수용하기 곤란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7. 어선법(안 제6조)

- ☐ 개정안은 어선중개업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1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2. (생략) 3.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4. ~ 7. (생략)	제31조의3(결격사유) ----- ----- ----- 1. 2. (현행과 같음) <u><삭제></u> 4. ~ 7. (현행과 같음)

- ☐ 개정안은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어선중개업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 다만, 어선중개업 등록을 한 자는 중개의뢰인에게 최선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객관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은 거래상·재산상 신뢰를 필요로 하는 해당 업무에는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고,

파산된 자의 경우에는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중개수수료 수입 등의 문제가 있어 중개의뢰인의 보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도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선중개업이 요하는 거래상·재산상 신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8. 어장관리법(안 제8조)

- 개정안은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는 사람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등록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제17조에 따른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8조(등록의 제한)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u>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u>	<u><삭 제></u>
3. ~ 5. (생략)	3. ~ 5.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어장정화·정비업의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어장정화·정비업’은 환경오염으로 인하여 생기는 어장의 피해를 예방하고 어장을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지속가능한 어업과 양식업 생산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어장의 퇴적물이나 어장에 버려진

폐기물을 수거·처리하거나 어장의 바닥에 흙이나 모래를 새로 까는 일 등을 수행하는 것인데,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 금융거래가 제한되어 수수료 수입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계약내용을 미이행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어려워 거래 상대방 보호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 따라서 동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장정화·정비업이 요하는 경제활동에서의 신뢰 확보를 위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는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제시하였음.

9. 영업조합법(안 제9조)

- 개정안은 「영업조합법」에 따른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 11. (생략) ②·③ (생략)	제24조(임원자격의 제한) ① ----- ----- -----. 1. 2. (현행과 같음) <u><삭 제></u> 4. ~ 11.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개정안은 영업조합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영업조합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대한영업조합의 임원 구성을 살펴보면, 이사장, 이사, 감사를 두도록 하며 임원 중 이사(9인 이상 12인 이하)의 경우 이사 수의 1/2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함을 규정⁴⁾하고 있는데 조합원인 이사는 현행법 제9조

4) 「영업조합법」

제20조(임원) ① 조합에 임원으로서 이사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상 12인 이하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둔다. 이 경우 이사 중 2분의 1 이상은 조합원이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를 부과할 수 있음⁵⁾.

개정안에 따라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제외할 경우 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임원인 이사의 출자금에 대하여 압류 또는 추심이 가능하게 되고,

이 경우 해당 임원(조합원인 이사)은 납입된 출자금 없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게 되어 기존 조합원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출자금 부족에 따른 조합의 자본 건전성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또한, 대한염업조합은 조합원과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자금 대부알선, 자금의 차입 및 기금조성 등 다양한 거래상 신뢰 또는 재산상 신용을 요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대한염업조합 운영의 건전성 및 지속성 확보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5) 「염업조합법」

제9조(출자와 책임) ① 조합원은 출자 1좌 이상을 가져야 하며, 조합원의 출자좌수는 출자총좌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출자 1좌 금액은 균일하여야 하며, 그 금액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경비 등 부과) ① 조합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에게 경비와 과태금을 부과할 수 있다.

10. 해양환경관리법(안 제10조)

- 개정안은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설립된 해양환경관리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2. (생략) 3.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 6. (생략) ②·③ (생략)	제101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 ----- -----. 1. 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6. (현행과 같음) ②·③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96조⁶⁾에서는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을 설립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101조에서는 해양환경공단 임원의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6) 「해양환경관리법」

제96조(공단의 설립) ① 해양환경의 보전·관리·개선을 위한 사업, 해양오염방제사업, 해양환경·해양오염 관련 기술개발 및 교육훈련을 위한 사업 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해양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단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사업소·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둘 수 있다.

- 개정안은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해양환경관리공단의 임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해양환경공단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해양환경 보전·관리 및 개선, 해양오염방제 등 깨끗하고 풍요로운 해양환경 조성을 위한 공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
특히,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선박 건조 및 수리 등 다수의 민간 발주 사업의 규모가 2024년의 경우 총 855억원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해양환경공단의 임원은 재정적 측면에서 중요한 결정을 수행함과 동시에 높은 책임성이 요구되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수적으로 갖추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 또한, 다른 입법례와 비교해 보면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 다른 공공기관의 경우에도 임원의 결격사유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하고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양환경공단 업무의 성격 및 임원에게 요구되는 자질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11. 해운법(안 제11조)

- 개정안은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없는 사람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려는 것임.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8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1. (생략)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2의2. ~ 6. (생략)	제8조(결격사유) ----- ----- -----. 1. (현행과 같음) <삭제> 2의2. ~ 6. (현행과 같음)

- 현행법 제4조7)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8조에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규정하고 있음.

7) 「해운법」

제4조(사업 면허) ①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제3조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양수산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단서 생략)

□ 개정안은 결격사유 중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를 삭제하여 파산선고자에 대한 효율적 경제 회생 및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파산선고자일지라도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이해됨.

□ 다만, 해상여객운송사업은 여객선으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거나 이에 따르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이는 공공사업의 특성을 지닌다고 볼 수 있음.

특히, 내항여객운송사업의 경우 섬주민의 교통수단인 연안 여객선을 운항하기 위한 사업인데, 내항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가진 자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사업 유지에 필요한 선박 및 자산 등이 압류 또는 추심될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려워 섬주민의 교통권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 따라서 개정안에 대하여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의 공공성을 감안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하여 관계부처인 해양수산부도 수용이 곤란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418